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4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
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일부개정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이상민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4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개정이유

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,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,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2호 개정)

- 1)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
- 2)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
- 3)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

나.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(안 제70조제2항 개정)

- 1)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“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”를 규정
- 2)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함을 명확히 규정
- 3)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

다.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(별표2 개정)

- 1)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

2)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

#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관급자재”를 “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”로 한다.

제42조제3호 중 “영 제39조제2항”을 “영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2항제2호 중 “단순암반자르기공사, 모래·자갈채취공사 등 그”를 “그”로, “인정하는 공사”를 “인정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가. 단순암반자르기공사, 모래·자갈채취공사 등

나.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(조경공사는 제외한다)

제77조의2제2항 중 “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”를 “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7장의 제목 “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”를 “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“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나.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나목 중 “부정한”을 “부당한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란(종전의 제3호다.) 제3호라.(종전의 제3호다.)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라목 중 “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”을 “나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다.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|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공사 입찰유의서”를 “입찰유의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공사계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물품구매 입찰유의서”를 “입찰유의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물품구매계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“용역 입찰유의서”를 “입찰유의서”로 하고, 같은 앞쪽 제2호 중 “용역계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추정금액 용어 정의에 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

규칙 시행 이후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에 대한 적용례)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적용례)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(생략)<br>2. “추정금액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<u>관급자재</u> 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도</u><br><u>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2조(입찰무효)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· 2. (생략)<br>3.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( <u>영 제39조제2항</u>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)<br>4. ~ 13. (생략) | 제42조(입찰무효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· 2. (현행과 같음)<br>3. -----<br>-----<br>----- <u>영 제39조제1항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4. ~ 13. (현행과 같음) |
| 제70조(하자보수보증금률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0조(하자보수보증금률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략)

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 
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  
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공사로 한다.

1. (생략)

2. 단순암반자르기공사, 모래·  
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 
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 
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 
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  
는 공사

<신설>

<신설>

3.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 
하지 아니하는 공사(조경공사  
는 제외한다)

제77조의2(과징금 부과에 세부적  
인 대상과 기준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

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인정하  
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  
사

가. 단순암반자르기공사, 모  
래·자갈채취공사 등

나.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  
과하지 아니하는 공사(조  
경공사는 제외한다)

<삭제>

제77조의2(과징금 부과에 세부적  
인 대상과 기준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

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
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 
때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과 횡  
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 
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 
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  
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
감경할 수 있다.

제7장 지방자치단체  
계약분쟁조정위원회

- 제82조(비용의 범위 및 정산) ①  
(생략)
-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  
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  
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  
회”라 한다)는 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 
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 
있다.
- 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35  
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  
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’(이  
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.

제7장  
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

- 제82조(비용의 범위 및 정산) ①  
(현행과 같음)
- ②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
- ③ (현행과 같음)